

민원서류
접수번호: 29662
접수일시: 2017.08.18 09:00
처리일시: 2017.08.18 12:00
처리유기목록물등록번호: 22762

민원처리기간70%단축프로젝트
201 . . .

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9호서식]

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

제출인	상호(대표자) 진주에코산업	사업자등록번호		
	주소 경남 하동군 옥종면 옥종중앙길 41 (전화번호: 055-884-0486)			
건축물	건물명 악양초등학교	위치 경남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349		
	연면적(m ²) 2,666.9 m ²	작업기간 2017년 08월 07일 ~ 08월 09일		
	석면건축자재[길이(m)·면적(m ²)·부피(m ³)] 텍스 1,265 m ³			
측정기관	대표자 김희환	사업자등록번호 888-81-00302		
	주소 경남 진주시 동진로 115			
측정 일시	2017년 08월 04일 ~ 08월 06일 (3일간)			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 결과(f/cc)	검출석면
	[별첨 1]			

측정 지점 위치(도식도)

[별첨 2]

「석면안전관리법」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.

2017년 08 월 일

제출인

진주에코산업(서명인)



하 동 군 수

귀하

첨부서류	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서 사본	수수료 없 음
------	--	------------

악양초 외1교 석면폐기물 처리용역 석면비산정도측정 보고서



2017. 08



(주)대한석면기술원

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15

TEL)055_755_3348 / FAX)055_763_3435

[별첨 1]

1.1 측정 결과

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서					
측정일	17. 08. 07				
의뢰기관(자)	진주에코산업	분석일	17. 08. 07		
측 정 장 소	경남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349 악양초등학교	측정자	이 나 혜		
분석방법	위상차현미경법	분석자	박 성 제		
시험 의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					
시료번호	측정위치	측정시간(분)	유량(L/min)	측정농도(개/cm ³)	초과여부
#1	부지경계선	240	10	0.001개/cm ³	기준이하
#2	부지경계선	240	10	0.003개/cm ³	기준이하
#3	부지경계선	240	10	0.001개/cm ³	기준이하
#4	부지경계선	240	10	0.001개/cm ³	기준이하
#5	위생설비입구	40	10	0.005개/cm ³	기준이하
#6	음압기	120	10	0.004개/cm ³	기준이하
#7	음압기	120	10	0.005개/cm ³	기준이하
#8	음압기	120	10	0.006개/cm ³	기준이하
#9	폐기물보관지점	40	10	0.003개/cm ³	기준이하
#10	폐기물보관지점	40	10	0.002개/cm ³	기준이하
종합의견	기준이하				
<p>상기 검사 결과는 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한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분석 결과입니다.</p> <p>2017년 08 월 07일</p> <p style="font-size: 1.2em;">(주)대한석면기술원 대표이사</p> 					
측정자	이나혜	분석자	박성제	책임자	김정희
협조자 우 52787 진주시 동진로 115 (주)대한석면기술원 / 홈페이지 전화 (055)755-3348 팩스 (055)763-3435 / daehan3348@hanmail.net					

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서

측정일	17. 08. 08		
의뢰기관(자)	진주에코산업	분석일	17. 08. 08
측정장소	경남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349 악양초등학교	측정자	이 나 혜
분석방법	위상차현미경법	분석자	박 성 제

시험 의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시료번호	측정위치	측정시간(분)	유량(L/min)	측정농도(개/cm ³)	초과여부
#1	부지경계선	240	10	0.002개/cm ³	기준이하
#2	부지경계선	240	10	0.003개/cm ³	기준이하
#3	부지경계선	240	10	0.001개/cm ³	기준이하
#4	부지경계선	240	10	0.001개/cm ³	기준이하
#5	위생설비입구	40	10	0.003개/cm ³	기준이하
#6	음압기	120	10	0.003개/cm ³	기준이하
#7	음압기	120	10	0.005개/cm ³	기준이하
#8	음압기	120	10	0.002개/cm ³	기준이하
#9	폐기물보관지점	40	10	0.002개/cm ³	기준이하
#10	폐기물보관지점	40	10	0.001개/cm ³	기준이하
종합의견	기준이하				

상기 검사 결과는 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한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분석 결과입니다.

2017년 08 월 08일

(주)대한석면기술원 대표이사



측정자 이나혜 분석자 박성제 책임자 김정희

협조자

우 52787 진주시 동진로 115 (주)대한석면기술원 / 홈페이지

전화 (055)755-3348 팩스 (055)763-3435 / daehan3348@hanmail.net

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서

측정일	17. 08. 09		
의뢰기관(자)	진주에코산업	분석일	17. 08. 09
측 정 장 소	경남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349 악양초등학교	측정자	이 나 혜
분석방법	위상차현미경법	분석자	박 성 제

시험 의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시료번호	측정위치	측정시간(분)	유량(L/min)	측정농도(개/cm ³)	초과여부
#1	폐기물보관지점	40	10	0.001개/cm ³	기준이하
#2	폐기물보관지점	40	10	0.003개/cm ³	기준이하
	이	하	여	백	
종합의견	기준이하				

상기 검사 결과는 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한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분석 결과입니다.

2017년 08 월 09일

(주)대한석면기술원 대표이사



측정자 이나혜 분석자 박성제 책임자 이나혜

협조자

우 52787 진주시 동진로 115 (주)대한석면기술원 / 홈페이지
 전화 (055)755-3348 팩스 (055)763-3435 / daehan3348@hanmail.net

1.2 의견

경남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349 악양초등학교 건축물의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진 2017년 08월 07일 ~ 09일 부지경계선, 위생설비입구, 음압기, 폐기물보관지점에서 총 22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석면배출허용기준 (0.01개/cm³) 이하로 나타났다.

측정일자
2017년 08월 07일

측정위치
●

해제 구역
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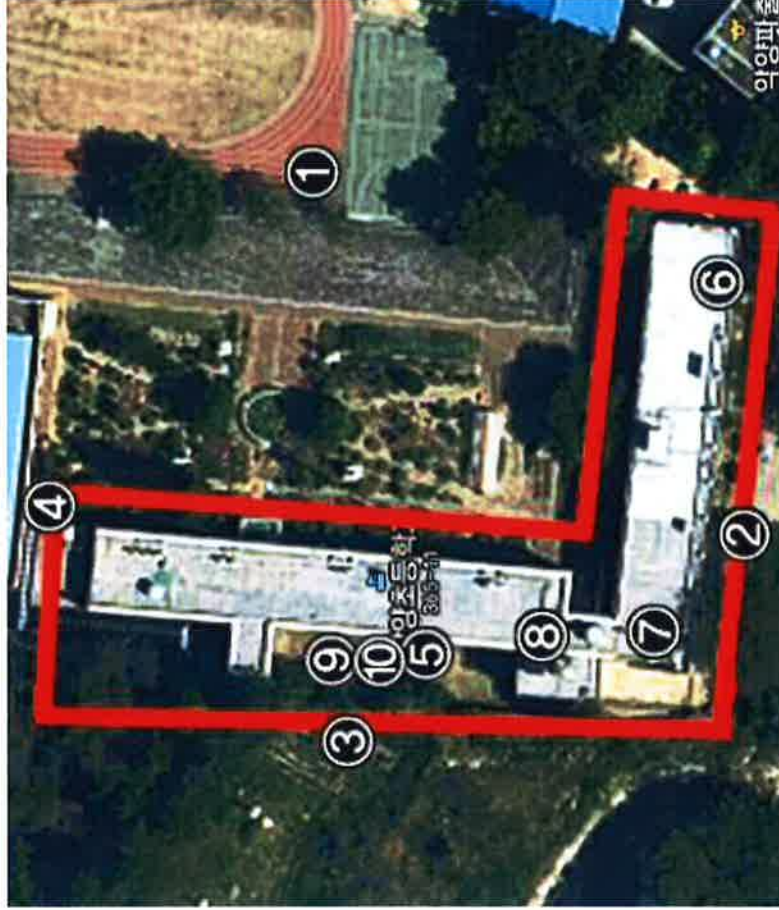
측정일자

2017년 08월 08일

측정위치



해체 구역



추정일자	2017년 08월 09일
------	---------------


추정위치	
------	---

해체 구역	
-------	---



[별첨 3]

1. 석면해체·제거 작업 신고 증명서

석면해체·제거 작업 신고 증명서			
신고 작업	신고번호	진 구-20170354	현 장 명 (공사명, 작업명) 아양초 외1교 석면해체공사 의용역
	소재지	경상남도 하동군 아양면 아양 사로, 349 아양초등학교 하동 유성로 371	전화번호
	작업기간	2017/07/27-2017/08/13	
신 도 인	석면해체·제거 업체명	진주에코산업	고용노동부 등록 번호 3141
	소재지	경남 하동군 옥종면 옥종중앙리 41	
	대표자 성명	강영주	전화번호 059-884-0486
<p>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80조의7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 (변경) 증명서를 내드립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2017년 7월 28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시청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/div>			

2. 석면조사기관 지정서

제2016-120002호

석면조사기관 지정서(최초)

기관명	주식회사대한석면기술원	
소재지	(52787)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15 (상대동, 지하1층) ()	
대표자성명	김희환	
지정사항	총 대행(지정) 한 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관 할 지 역 대 행(지정) 한 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대 행(지정) 지 역	전국

※ 준수사항

1. 석면조사기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2. 석면조사기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16. 8. 9

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시청

